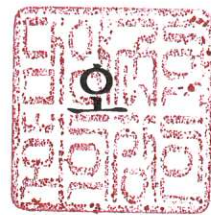


공 포 문

담양군의회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(2021. 12. 21.)에서
의결된 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을 공포한다.

2022년 2월 21일

담양군 의 회 의 장 김 정



붙임 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1부.

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

1. 제안이유

-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‘21.1.12. 공포) 및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자율적인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규정한 「지방공무원법」(‘21.10.8. 공포) 일부개정에 따라 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목적(안 제1조)
- 법정대리, 지정대리, 책임 등(안 제2조, 제3조, 제4조)

3. 규칙 : 붙임

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

「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붙임 : 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1부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. 1. 13.일부터 시행한다.

담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담양군의회 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,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(이하 “대리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정 대리) 의장의 결원, 출장, 기타사고(이하 “사고”라 한다)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.

1.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.
2.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.

제3조(지정 대리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.

②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장\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,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.

제4조(책임)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. 1. 13.일부터 시행한다.